탄원서

사건번호	2026도15591
피고인	김건희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수신	대법원 제2부 귀중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저는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을 앞두고, 한 사람의 자유와 형사책임이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공직 인사와 공적 의사결정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죄의 요건이 증명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심리하시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증거법칙 위반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시 심리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검사의 상고에 법률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및 이유무죄 판단도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항소심 판단이 갖는 의미

2026년 6월 26일 제1심은 징역 7년을, 같은 해 9월 22일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세한도 복제품 부분은 금거북이 수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특별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1~4-1]

이처럼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금품마다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그 수수 경위와 청탁의 성격, 피고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 알선수재죄의 성립과 증명의 한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알선의 실행이나 청탁의 성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알선자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금품이 그러한 알선과 대가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은 알선의 상대방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금품수수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과 관련된다는 점은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여자의 막연한 장래 기대와 수수자의 짐작만으로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또한 당사자의 관계, 청탁의 내용, 금품의 규모와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대가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대가와 알선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물품마다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통된 대가관계 자체가 증명되었는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4. 고의의 인정과 무죄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은 알선 명목에 대한 범의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도, 자백 및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범의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서 고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8]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8조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나 금품의 고가성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유죄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 당시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기록에 따라 판단하여 주십시오. [9~11]

5.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법률적 기준이 이 사건의 개별 행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공개된 항소심 보도에서 확인되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가. 귀금속 수수 부분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받은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은 맏사위의 공직 인사 청탁 및 사업상 도움과 관련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목걸이 수수 후 피고인이 회사의 현안을 묻고 인사 관련 부탁을 전달받아 연락한 정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 3]

다만 각 수수 시점과 청탁이 전달된 때, 관련 연락의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종합할 때, 전체 귀금속에 공통된 알선 대가성이 인정되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사후 정황으로 앞선 수수의 고의를 추론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적·논리적 연결이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전달된 금거북이에 대해서는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세한도 복제품은 한지살리기재단의 홍보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탁의 대가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자는 금거북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의 무죄 주문이 아닌 이유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2, 3, 3-1]

같은 공여자가 같은 시기에 전달한 물품이라도 제공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원심의 구별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세한도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에 법률상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금거북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명 청탁의 표시와 피고인의 수수 당시 인식이 법률상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살펴 주십시오. 포괄일죄라는 죄수관계만으로 증명되지 않은 수수행위까지 유죄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부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3년 2월경 받은 그림은 공천 관련 청탁을 대가로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직무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알선의 대상이 정당 내부의 사무인지, 공무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공적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법률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 청탁이 언제나 알선수재죄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청탁의 내용과 인정 사실에 따라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 디올 가방 등 수수 부분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받은 금품은 지인의 공적 지위 임명 등 직무 관련 부탁과 연결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4-2] 이 부분 역시 면담과 부탁의 존재뿐 아니라 그 부탁과 각 금품의 대가관계, 피고인의 인식이 어떠한 정황에 의해 인정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수수행위를 하나의 대가관계로 평가하였다면 그 근거가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주십시오.

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부분

원심은 구매대행이라는 설명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공여자가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사업 관련 기대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시계 전달 전에 정해져 있었던 사정과 사후 통화의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실제 알선의 부재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수수 당시 고의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 법률상 오류가 없다면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탄원은 각각의 금품을 무조건 별개의 범죄로 취급하거나 항소심의 증거 판단을 새로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알선의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증명의 기준이 정확히 지켜졌는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6. 상고심의 판단 범위와 파기 후 조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합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독립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1]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법령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각 상고이유를 그 기준에 따라 심리하시어 법률상 파기사유가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96조 또는 제397조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특히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11]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법률상 오류가 확인된다면, 포괄일죄 또는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관계에 따라 파기 범위를 정하여 주시고, 그에 맞추어 부수처분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특가법 제13조의 몰수·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실제 취득재산의 범위, 몰수 대상 및 추징액 산정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7. 별도 확정판결과 형사책임의 형평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별도 사건인 2026도6826의 쌍방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확정판결을 존중하되 별개 공소사실의 판단이 이 사건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2]

이 사건이 파기되어 다시 형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시기와 확정판결의 내용, 동시 심판 가능성을 확인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형평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에 비추어 동시에 심판할 수 없었던 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확정판결이 그 자체로 당연한 파기사유나 감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10, 13]

8. 다시 형을 정하게 될 경우의 탄원

만일 법률상 파기사유가 인정되어 환송심에서 형을 다시 정하게 된다면,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과 수사 이후 일부 금품의 반환 등 불리한 사정을 지적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알선에 나선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참작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10]

그러한 사정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로 삼거나 이미 인정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형을 정할 필요가 생긴다면 확정되는 책임의 범위와 행위별 사정을 세심하게 헤아려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9.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저는 이 탄원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음을 이유로 예외적인 대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자신의 지위 때문에 법이 정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되며, 그 지위 때문에 입증된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2항과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2호가 확인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4]

한 사람에 대한 형사판결은 그 사람의 자유와 남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기록과 법리에 따라 살피시고, 법률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인정되는 책임은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시되, 증명되지 않은 책임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2026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

참고자료

재판 경과 및 공개 보도

[1] 연합뉴스, 2026. 6. 26. 제1심 선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6124500004

[2] 연합뉴스, 2026. 9. 22. 항소심 선고 및 양형 이유 종합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38352004

[3] 뉴시스, 2026. 9. 22. 세한도 복제품의 성격 및 시계 관련 대가성 판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2_0003800870

[3-1] 뉴시스, 2026. 9. 22. 세한도 복제품의 이유무죄 및 포괄일죄 관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2_0003800696

[4] 연합뉴스, 2026. 9. 23. 피고인 상고 및 9. 28. 특별검사 상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77300004

[4-1] 특별검사 상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55600004

[4-2] 한겨레, 2026. 9. 22. 개별 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항소심 보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9092.html

[4-3] 연합뉴스, 2026. 10. 22. 대법원 제2부 배당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2102300004

적용 법률 및 주요 판례

[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6

[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570

[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887

참고자료

증명책임·상고심·형평 및 국제인권규범

[8]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범의의 증명과 간접증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61

[9]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10] 형법 제1조·제13조·제37조·제39조·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11]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83조·제396조·제39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71

[12] 대법원 2026. 11. 19. 선고 2026도6826 판결, 대법원 주요판결 공개자료.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411&type=0

[1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후단 경합범의 동시 심판 가능성.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112

[14]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2호(2007), CCPR/C/GC/32 제30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자료.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pair/line/736

사건 경과와 개별 인정 사실은 공개된 재판 보도에 기초하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법률 판단은 재판기록을 따릅니다. 인용 법령은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 및 개정 경과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